

2003. 6.

#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總務委員會

# 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사무위임조례 등중개정조례안	2003. 6. 7	2003.6.11	2003.6.12	2003.6.18	자치센터 기획팀장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6.24	2003. 6.24	2003. 6.25	2003. 6.25	기획감사 과장
충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안	2003. 6. 7	2003. 6.11	2003. 6.12	2003. 6.18	가정복지 과장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안	"	"	"	"	"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	"	"	"	"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 인력의 본청 이관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 2) 주요골자

- “생략”

- 상수도관련사무 사무분장
  - 상수도특별회계 각종수입의 징수결정 및 정리(물관리사업소)
  - 상모면지역의 검침, 부과자료 관리 및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독려(수안보개발사업소)

## 라.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1) 제안이유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충주시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노인복지관의 주요업무 및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를 정함(안 제5조)
  - 충주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배우자와 함께 이용 가능)
-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1조)
-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마.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1) 제안이유

- 재가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생활의 적응력을 배양하고 장애단체별 기능 활성화와 재활상담 등 정보전달의 모체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사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하부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음.
- 금번 충주시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은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조례 제599호로 “충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전면 개정 공포하여 동사무소만 그 기능과 인력을 일부 축소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미 동에서 위임받아 추진하던 업무중 일부를 시로 이관하여 운영하므로 동의 행정 능률과 행정사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코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월 28일에 조례 제596호로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43명에서 1,154명으로 증원하는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나 1998년이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력의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오던중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시행규칙중개정규칙”의 시행지침이 시달되었고 6월 24일에는 “충주시물관리 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 정원 승인 사항이 시달되어 그간 인원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부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 라.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에관한 규정과 같은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7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에 의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마련한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
-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칙이 22조, 부칙 2조 및 별표로 구성되었으며 본칙 22조중 제15조의 시설의 이용에 “충주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로 포괄적 이용대상자를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한 것은 외지인은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7조 및 제11조의 별표에 있는 이용료의 산정 근거와 금액은 적정한 이용료금인지, 안 제17조의 위탁운영시 “노인단체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운영능력을 감안해서 노인단체의 대상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부칙은 보통 조문이 6개 이상일 때는 “조”를 붙이나 그 이하일 때에는 “항”으로 하는 것이 부칙의 일반적 형식으로서 2개뿐인 부칙 조항은 “항”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에 의거 충주시 호암동 185-4번지에 “충주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 정의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를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여성만이 안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인지 남성도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될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부칙은 조문이 6개 이상일 때는 “조”를 붙이고 6개 미만일 때는 “항”으로 하는 것이 부칙의 일반적 형식으로, 본 부칙도 3개이므로 “항”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 ▶ 질의 : 개정조례안에 의해 동직원 축소 예상인원은?  
 ○답변 : 동별 1~2명 정도

###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질의 : 지방공무원 인력 보강이 당초 32명에서 57명으로 증원되는 사유는?  
 ○답변 : 물정책과 신설 및 읍면동 인원 적은 부서에 1명씩 보강하려는 것임.
- ▶ 질의 : 보강되는 인력중 기획행정국이 타국에 비해 171명에서 188명으로 17명이나 증가되는 사유는?  
 ○답변 : 세정과, 자치센터 광고물 업무이관에 따른 증원 및 관광업무 보강에 따라 부족 인력 충원

### 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질의 :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소의 소관 업무는 무엇인가?  
 ○답변 :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폐지에 따라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지하수 관련업무, 하수도정비 관련 업무, 위생종말처리시설 유지, 관리 등의 업무 관장

##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교현2동” 을 “교현동” 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위치) 복지관은 충주시 <u>교현2동</u> 688-1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u>교현동</u> -----